

#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2,595,731	14,477,872
일반회계	447,851,027	13,435,531
특별회계	34,744,704	1,042,341
공기업특별회계	24,679,565	740,38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공기업)	11,174,911	335,24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504,654	405,140
기타특별회계	10,065,139	301,954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87,827	56,635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2,881	8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88,120	59,644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984,670	89,54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01,641	96,049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97,52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